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 미구성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내 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은 재선충병 발생 지역의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역대책본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되며,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지역 재선충병 방제대책수립, 감염목 방제사업 실시,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지역의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국립공원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이하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하고, 1.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정보의 공유, 2.공동예비관찰조사 및 공동방제의 실시, 3.그 밖에 지역단위 방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¹⁾」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지역 방제대책본부장은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²⁾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자체에서는 재선충병 발생상황 및 공동방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과-0000, 2016. 0. 0.)한 바 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관내 광산구 ○○동에서 아래 [표]와 같이 2013. 11. 4.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6본이 최초 발생되었고, 이후 2014~2017. 9월까지 47본의 감염목이 추가 발생됨에 따라,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정보의 공유, 공동예비관찰조사 및 공동방제 실시 등 재선충병 피해확산에 따른 완전방제를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이 매우 필요한 시기임에도, 2017. 9월 감사일 현재까지도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소홀히 하고 있다.

1) II.방제조직/2.방제대책본부/나.지역방제대책본부/(2)운영

2) 1.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는 관할구역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관리기관, 국방관련기관, 지역산림조합 및 민간단체의 장과 지역주민, 연접·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유림관리소장 등으로 구성

2.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의 구성원은 재선충병 발생과 방제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예찰 및 협업방제 등 지역의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함

3. 지역의 재선충병 방제에 관한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표] 연도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계	53본	6본	4본	24본	19본	
광산구	34본	6본	4본	8본	16본	
서 구	19본	-	-	16본	3본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

[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하시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